

전자거래분쟁에서 준거법 적용상 해석론*

강 이 수 **

〈목 차〉

- I. 서론
- II. 준거법 적용의 일반론
- III. 준거법 적용의 해석론
- IV. 결론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숭실대학교 경제·국제통상학부 교수

I. 서 론

우리는 이제 빠른 지식 정보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국제상거래도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거래가 기존의 종이서류에 기초한 상거래와는 전혀 다른 바탕위에 서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거래는 국경이 없는 범세계적인 사이버상에서 다양하고 값싼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상거래의 국제화로 인한 장점을 누리는 한편, 비대면 상황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각종 분쟁으로 말미암아 그 부작용이 멀리 외국까지 확대된다는 분쟁의 국제화라는 위험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거래에 발생하는 분쟁은 전자거래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불특정 다수 상대방과의 거래, 대량거래, 비대면거래, 경쟁심화에 따른 독점화 등에서 발생되기 쉽다. 이렇게 발생된 분쟁 중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중재합의에¹⁾ 의한 방법을 제외하

1) 국제사법 중 중재에 관한 준거법 조항은

제29조제1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형평과 선의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4항: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7조 제1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

제39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조건)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및 제

고는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때 이때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적용 중 각국의 법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어느 나라의 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하면, 나아가 수소법원은 다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적용에 대하여 초점이 모아진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강구와 별도의 연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거래에서 준거법 적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을 중심으로 먼저, 준거법에 대한 일반론으로 전자거래에 준거법 적용 검토 및 준거법의 당사자간 합의여부 등을 살펴보고 이어, 본고의 핵심을 이루는 준거법의 적용에 대한 해석론으로 일반계약상 준거법 및 소비자계약상 준거법의 적용상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함과 아울러 이에 관련된 준거법상 강행규정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전자거래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따른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는 계약 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논의의 범위로 한다.

II. 준거법 적용의 일반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2001.4.7. 법률 제6465호)은 이전의 섭외사법에서는 준거법에²⁾ 관해서는 명확한

27조는 외국중재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국제협약에 의하여 실현하고 있다.

2) 그 외 준거법에 관한 외국의 법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와싱튼협약(제42조제1항), 2)ICC중재규칙(제13조제3,4,5항), 3)UNCITRAL중재규칙(제33조제1,2,3항), 4)UNCITRAL모델법(제28조제1,2,3,4항), 5)Vienna협약(제1조제1항, 제6조, 제94,95조, 제7조제3항), 6)Hague규정(제7조, 8조제1,2,3항), 7)EU협약(제3조제1,2,3,4항, 제8,9조, 제4조제1,2항) 8)Lloyd's협회(협회표준보험약관), 9)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제187조, 제188조제1,2,3항, 제6조), UCC(제2편제302조), UCITA(제109조), 통신품위법(제230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금번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준거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³⁾ 특히 국제사법에서 국제조약 및 대부분 선진국 입법례에서 사용하는 상거소(habitual residence) 개념을 「주소」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상거소지법을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⁴⁾ 이른바 브뤼셀협약을⁵⁾ 모형으로 하여 이전에는 없던 소비자계약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계약 준거법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전자거래에서의 준거법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논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자거래에 준거법 적용 검토

채권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체계는 전자거래 계약에 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즉, 전자거래 계약도 채권계약, 즉 계약으로 성질이 결정된다. 그리고 전자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이유로 소비자계약이라는 결정기준의 구성요소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소

3) 박종삼, “전자상거래에서 국제재판권의 논점”,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p.237.

4) 국제사법 제29조제1항: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상거지소법을 원용할 수 있다.

5) 브뤼셀협약에 관한 상세는 석광현,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브뤼셀 협약)”,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2001, p.321 이하 참조. 2002년 3월 1일자로 브뤼셀협약의 법 형식은 국제조약으로부터 유럽연합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브뤼셀규정”이다. 브뤼셀규정에 관하여는 석광현,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규정(‘브뤼셀규정’)—브뤼셀협약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양논총 제20집 제1호, 2003.8. 참조.

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일 것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이견이 없다. 이 해석에 대하여 전자적 계약의 탈지역성 즉 "물리적인 소재지가 무관하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인터넷상 공간의 특성"⁶⁾에 비추어 문제를 제기하여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계약체결이 전자적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전자적 특성을 갖는 것에 의해서만 특징 지워지는 광의의 전자적 계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이행 또한 전자적 의사소통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의 전자적 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적용의 면밀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가져올 여지가 있지만 별다른 법 적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본다.

한편, 국제사법 제8조에서 예외조항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만약 계약상 준거법을 정하는데 있어 논의가 모자란다면 국제사법 제8조의 활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럽연합이 1999년 말 확정한 "역내시장에서의 전자거래의 몇몇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The Directive on Certain Legal Aspect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tional Market)에서도 "소비자계약의준거법에 대해서는.....로마협약과 같은 국제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한다.⁷⁾ 이는 전자거래로 체결된 소비자계약도 회원국의 내국법에 우선하는 국제조약으로서의 이미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는 로마조약의 적용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금지급이 사이버머니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지불수단의 특수성을 어떻게 감안할 것이나의 문제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이버머니를 지불하는 대가로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 급부를 제공받는 계약 자체의 준거법 문제에 관한 한, 이러한 특수사정이 얼마나 준거법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6) 노태학, 정보법학, 제5권, 2001, p.25.

7) 노태학, 전계서, p.6.

그러나 전자적 의사소통방식의 탈속지성 때문에 계약에 적용되는 실질의 준거법이⁸⁾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근거도 없고 국제사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도 현행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⁹⁾

2. 준거법 지정여부에 따른 검토

준거법 약정의 성립, 유효성, 그리고 그 법률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준거법 약정 즉 준거법 선택의 합의여부에 관한 준거법 적용 여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준거법 선택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선택될 일반적인 법질서이다(제25조 제5항에 의한 제29조 제1항의 준용). 이하에서는 당사자간 준거법 합의여부에 따른 논점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준거법 지정이 합의된 경우¹⁰⁾

전통 국제사법 이론에 의하면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외국법은 사법이며, 공법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공법과 사법

8) 국제사법 제17조 제1항

9) 장준혁, “사이버거래에서의 국제분쟁과 준거법”, 발표논문집, 국제사법학회, 2002.11, p.43.

10) 국제사법 1)제25조 제1항: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적용을 받는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그 계약내용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제2항 당사자는 계약 일부라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판 1998.7.14, 98 다39707). 3)제3항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제4항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 관련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5)제5항 준거법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 구별은 매우 어렵고 국가에 따라서는 양자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별기준 또한 국가별로 상이하고, 무엇보다도 외국공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당해 법규를 적용한 결과에 착안한 국제사법적 고려에 기초해야지, 어떤 법규의 성질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¹¹⁾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 경우 실질법의 결정은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른다. 국내 매수인이 외국의 매매당사자와 사이에 계약관계에 따른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외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행지는 외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외국의 매매법에 의하여 한국이 이행지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국내의 이행지재판적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은 당사자자치의 준거법 연결원칙의 전제 위에서 추가적인 합의내용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면 될 뿐이므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제14조를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준거법 지정에서 제6조는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국제사법 제6조는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와도 관련된다. 다만 동조는 소극적인 규정방식을 취하므로 제6조의 결과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법규가 준거법의 일부로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준거법 소속국의 외국공법을 적용할 경우 그 근거는 다양할 수 있다. 하나는, 한 국가의 법질서는 하나의 단위로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므로 외국공법도 준거법의 일부로서 적용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법규는 이른바 ‘강행법규의 특별연결

11) 석광현, “개정 국제사법의 소개”,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8.p.36.

이론'이라는 독자적인 연결원칙에 의해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그 밖에도 국제적인 공법이론(섭외공법이론) 등에 의해 설명할 여지도 있다.¹²⁾

2) 준거법 지정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¹³⁾

당사자가 적용할 법을 선택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인 매수인이 소제기한 국내법원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당해 매매계약에 적용할 법을 결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제계약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동조 제1항), 특징적 이행을 하여야 할 당사자의 상거소 또는 주된 사업소, 영업소소재지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지국법으로 판단된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특징적 이행을 하여야 할 당사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의 상거소 또는 주된 사업소, 영업소소재지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예컨대 전자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

12) 국제적 강행법규는 '준거법 소속국의 강행법규', '법정지의 강행법규'와 그 밖의 경우 즉 '제3국의 강행법규'로 구분되는데, 국제사법은 법정지의 강행법규(제7조)와, 준거법 소속국의 강행법규(제6조)에 관하여는 규정하나 제3국의 강행법규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3국의 강행법규의 처리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 정립된 견해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로마협약(제7조 제1항)은 제3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에 대해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많은 논란이 있고 영국과 독일 등은 그의 적용을 유보하였다.

13)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제2항: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 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요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라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지침 제14조는 사업자의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수소법원은 미국의 매매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법에 의하여 이행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행장소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불특정채무인 매매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전)의 지급은 채권자(매도인)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국내법원에 제기한 소는 보통 이행지재판적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법의 모든 연결원칙은 당해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법을 적용한 결과가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사법이 지향하는 올바른 연결원칙을¹⁴⁾ 실현하고자 ‘예외조항’을 두었다(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다만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가¹⁵⁾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제8조 제2항). 예외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예로는 다양한 유형의

14) “올바른 연결”이라 함은 실질법적으로 보다 나은 법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라는 연결체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법을 의미한다.

15) 섭외사법(제9조)은 국제계약법 분야에서만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를 허용하였으나, 국제사법에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사후적인 당사자자치를 허용하였다(제33조). 그러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경우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제한하였다(제27조, 제28조).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국제사법은 특히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1980년 유럽공동체협약(“로마협약”)」을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이상인 ‘국제적 판결의 일치’를 도모하였다(제17조, 제25조 이하). 한편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브뤼셀협약”)」 병행협약인 루가노협약 및 당시 헤이그국 제사법회의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던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의 1999년 예비초안을 참작하였다(제27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28조 제3항 내지 제5항).

불법행위와 선박의 편의치적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예외조항의 적용은 엄격한 요건 하에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예외조항이 도입된 결과 과거와 비교하여 준거법 결정상의 법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나,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는 국제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불가피하다. 앞으로는 준거법 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당사자자치가 타당한 쟁점이 아니라면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유추된다.

III. 준거법 적용의 해석론

전자거래에서 준거법 적용상 문제를 일반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소비자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 구분하여 국제사법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일반계약의 준거법

상술한 바와 같이 계약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정에 의하여 선택된 법이 그 계약상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된다. 이 약정은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¹⁶⁾ 다만, 묵시적 당사자자치는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된다 (동조 제2항). 종래 우리나라의 판례는 계약 특징적 급부를 하는 자가 어느 당사자인가에 따라 묵시적 당사자자치나 추정적 당사자자치를 인정한 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국제사법 제25조 제2항은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

16)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동항은 계약상 법률관계를 세부의 단위 법률문제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단위법률 문제에 관하여 달리 정하거나 그 중 일부에 관해서만 준거법을 정하는 형태로 준거법 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은 순수한 국내적 법률관계라고 할 법률관계에 대하여 실질법적지정을 하거나 저촉법적 지정을 피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¹⁷⁾ 동항은 “순수한 국내계약에 대하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당사자자치를 존중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내법의 강행규정이 여전히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폐해를 방지 ”한 규정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¹⁸⁾

- 17) 섭외사법하에서는 외국법준거약정이 있다는 점 외에는 순수한 국내적 법률관계인 경우에 ,외국법준거약정 때문에 이 법률관계가 섭외적 법률관계로 되는 가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해석론이 상이해질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툼의 실익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은 당사자가 피한 법률효과가 실질법적 지정이나 저촉법적 지정이나를 묻지 않으므로, 동항이 적용되는 경우인 한 이를 구별할 실익도 없게 되었다.
- 18) 법무부, 전계서,2001, p.91: 석광현, 2001년도 개정 국제사법 해설, 2001,p.166, 한편 노태악논문은 순수한 국내적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약정[도].....당사자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되,“다만 한국법의 적용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의 준거법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 설을 취한다. 노태악 ,[전자거래의 재판관할과 준거법:개정 국제사법, 헤이그신협약 및 UCITA와 관련하여]정보법학 제5권(한국정보법학회, 2001). 1~32면. at 3면의 주2(서울지방법원, 국제거래, 상사 소송의실무 (1997),23면).당사자의 준거법약정의 목적 여하에 따라 적용법규를 달리하는 해석론이다. 흥미롭기는 하나 타당성은 의문이다. 첫째, 이것의 연결점의 회피나 제8조의 예외규정의 원용에 적절히 의거하는 해석론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제시되고 있는 해석론이라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하는데, 아무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신국제사법 제 25조 4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요컨대, 제25조 제4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약정의 목적 여하가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제7조에서 규정하듯이 내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이 문제될 때에는, 그 내국 실질법규 자체의 입법 의사를 해석한 결과 내국법 적용 회피목적을 판斷으로 하게 될 수는 있지만, 제25조 제4항에서는 전혀 이런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노태악 논문은 “당사자자유”라는 용어를 재판관할의 합의에 관해서도 사용하는 등 정통적 용어체계에서 벗어난 면도 보여주고 있으므로, 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정확의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지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국제사법은 일반계약에서 당사자들에 의한 준거법의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과 변함이 없다.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선택을 인정하는 근거로서는 예측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적극적 근거 및 객관적, 외형적 사실을 연결점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고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소극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지 만 어쨌든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선택은 전자거래에 있어 더욱 더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한편, 이전의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 없을시 행위지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바뀌었으며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보고 그 청약을 받은 자가 승낙을 한 때에 그 청약의 발신지를 알지 못한 때에는 청약자의 주소지를 행위지로 본다는 규정도 삭제되었다. 행위지법, 즉 계약체결지법 적용원칙은 이전부터 너무 경직적이고 계약과 준거법과의 관련성이 불충분한 경우가 생길 뿐 아니라 청약과 승낙을 준거법선택규칙에 있어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고 자의적으로 될 경향이 많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은 또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대한 추정규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양도계약, 이용계약, 위임, 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에 따라 특정한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그의 상거소지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법 규정은 특히 좁은 의미의 전자거래 성격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의 전자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물품의 매매계약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물품인도지 등의 이전의 이행지 관할도 계속 적용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사용허가 등 온라인상에서 채무의 이행까

지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의 좁은 의미의 전자거래의 경우에는 이행지 관할의 적용이 곤란하므로 계약당사자라는 권리주체에 주목하여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나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⁹⁾

2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국제사법에서도 소비자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과 관련해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은 적어도 그 소비자계약이 ①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③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²⁰⁾

국제사법은 또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대한 추정규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양도계약, 이용계약, 위임, 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에 따라 특정한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그의 상거소지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19) 안제우, “국제전자상거래에서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무역학회지 제28권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9, pp.569-570.

20) 안제우, 앞의 논문, p.570.

것으로 추성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적어도 그 소비자계약이 앞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계약의 준거법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되어 소비자는 친밀한 국내법에 의해 국내 소비자계약에 있어서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계약특칙에서 국제사법 제25조가 인정하는 당사자자치, 그리고 제26조가 인정하는 특징적 급부를 공급하는 주소지법에의 연결은 교섭력이 강한 자 내지 사회경제적 강자 위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경향을 가질 소지가 있다. 국제사법 제27조 제 1항 내지 제3항은 동조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정하여 당사자자치에 제한을 가하고 객관적 연결규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칙의 적용대상인 소비자계약은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 기준은 국제사법에서 입법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즉 제27조에서는 소비자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 또는 영업”으로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 즉 사업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그리고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기업이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제3호는 외국으로의 쇼핑주선 등을 선정한 것이다.²²⁾

또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제25조에 따라 당사자 자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준거법 약정 여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국가의 강행법규가 부여하는 보호[는 항상]관철된다.²³⁾ 그런 강행규정의 예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1조,

21) 독일민법 제14조 (사업자)제1항 (“사업자라 함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영업활동 또는 독립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권리능력이 있는 인적회사를 말한다.”) 그 번역은 양장수, 2002년판 독일 민법전 : 총칙. 채권물권, 박영사, 2002, p.5를 전재함.

22)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 2001, p.99 주54.

23) 법무부, 앞의 책, 2001, p.100.

제35조에서와 같이 소비자가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²⁴⁾

한편, 국제사법 제25조가 인정하는 준거법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계약으로서 제27조 제1항 소정의 요건에 충족하는 한 제26조의 연결규칙대신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비자계약의 상거소지법이 객관적 준거법으로 지정된다. 그렇게 정해진 객관적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익보호의 수준이 우리나라법의 경우 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용인된다. 다만 그 적용결과가 공서에 위반된다고 (제10조) 판단되어 우리나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판례) 되거나, 우리나라의 관련 실질법규가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직접 적용될 (제7조) 여지는 있다. 또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약의 방식의 준거법은 항상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27조 3항). 즉, 제17조 소정의 행위지주의나 선택적 연결주의는 배제된다(제9조2 항 제2호).²⁵⁾.

3. 준거법에서 강행규정 적용 검토

국제사법에서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강행법규는 여전히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제7조). 이는 종래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온 것인데 국제사법에서는 로마협약(제7조 제2항)을 따라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국제사법적 판단의 결과임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우리나라 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단순한(또는 통상의) 강행법규²⁶⁾가 아

24) 법무부, 앞의 책, 2001, p.100 주56.

25) 장준혁, 앞의 논문, p.38-39.

26) 당사자자치에 관한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의 강행규정, 소비자계약에 관한 제

니라, 예전대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등²⁷⁾과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추가하여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를 말한다. 제7조에 의해 국제적 강행법 규의 개념이 국제사법에 도입되고, 국제사법의 방법론상의 다원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²⁸⁾

국제사법 제7조는 사법관계에서의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법규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어떤 내국 또는 외국의 국내법 규정을 가리켜 국제적 강행 법규라고 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실질법규, 즉 임의법규에 대응되는 의미에서의 강행법규여야 한다. 둘째, 그 실질법규는 섭외적 사안에서도 일정한 내국관련만 있으면 그 강행법규로서의 성격을 관찰한다는 입법의사가 표현되어 있는 실질법규 이여야 한다. 또한 국제적 강행법규의 논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 객관적 준거법이 외국법일 수 있다. 이 때에도, 국제사법 제7조가 명문화하여 보여주고 있듯이 내국(법정지)의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여부를 논의 할 여지가 있다.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한 객관적 준거법이 법정지 법인 경우에도 관련 외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내지 존중여부를 논의할 여지는 있다. 이를 긍정할 경우, 그 근거로서 이런 경우에도

27조 제1항의 강행규정과 근로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항의 강행규정은 이러한 단순한 강행법규를 말한다.

27) 그 밖에 대리상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 해상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면하는 당사자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90조 제1항과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인지가 문제된다. 대리상의 경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부정해야 할 것이다.

28) 석광현, “개정 국제사법의 소개”, 참조

동법 제7조를 유추적용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될 것이다. 사실 제7조가 저촉법적 규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의의를 갖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라던가 다른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준거법 소속국 아닌 제3국의 국제적 강행법규를 적용, 존중하는 근거로 원용될 때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이 관철되는 강행법규 소속국 외의 국가의 국제적 강행법규(그것은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이와 상관없거나 심지어 충돌하는 사상적 배경에 기초를 둔 법규일 수도 있다)는 제7조나 그 유추적용에서 준거를 찾아 적용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자 보호법규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실관계가 제27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내국 강행법규도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적용될 여지는 있다.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외국인 경우에도, 그 국가의 국제적 강행법규도 마찬가지로 적용, 존중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제사법 제7조의 유추적용의 문제이다.²⁹⁾

아울러 공서조항의 경우 우선 국제사법에 의하여 일단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고 그를 적용한 결과가 내국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므로 외국법의 내용이 문제되는 데 반하여,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법규는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국법의 내용에 관계없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서조항과 다르다. 즉 공서조항은 거절의 과정인 데 반하여 국제적 강행법규는 선택의 과정이다. 따라서 국제적 강행법규를 “직접적용법(*lois d'application immédiate*)”이라고 하는 것이다.³⁰⁾

29) 장준혁, 앞의 논문, pp.39-40.

30) 독일에서는 “Eingriffsnorm”(간섭규범 또는 개입규범)이라고도 한다. 다만 그 범위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실질법의 영역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는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에서 현저한데, 이러한 법규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만일 당사자들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실질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면 실질법의 입법취지가 이탈 되므로 국제사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법적 차원의 조치로서,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도 일반원칙을 수정하였다.³¹⁾ 소비자의 보호는 특히 약관규제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V. 결 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은 일반적인 국제계약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이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계약성립, 이행상 특수성, 거래 국제성, 장소결정 특수성 등으로 전자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제사법안에서 이를 타당하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하에 전자거래계약에서 준거법 적용에 관계되는 해석상 문제점 등을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을 중심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전술한 국제사법상의 준거법에 적용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자거래에서 준거법 적용에 대한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입법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31) 국제사법, 제27조, 제28조.

첫째, 전자거래에 준거법 적용에 관해서는 전자적 의사소통방식의 탈속지성 때문에 계약의 실질의 준거법이(제17조제1항) 될 수 없다고 할 근거도 없고, 국제사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도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에 따라 먼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 경우 실질법의 결정은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른다. 국내 매수인이 외국의 매매당사자와 사이에 계약관계에 따른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외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행지는 외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어, 당사자가 적용할 법을 선택 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당해 매매계약에 적용할 법을 결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제계약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동조 제1항), 특징적 이행을 하여야 할 당사자의 상거소 또는 주된 사업소, 영업소소재지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지국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셋째, 준거법이 소비자계약에 적용될 때에는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제27조 제1항) 신설해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 또는 영업”으로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 즉 사업자이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되어 진다.

넷째, 국제사법에서는 준거법에 의하여 강행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강행법규는 여전히 적용됨을 명시하였다(제7조). 즉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를 말한다. 제7조에 의해 “국제적 강행법규”의 개념이 국제사법에 도입되고, 국제사법의 방법론상의 다원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에 관한 향후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준거법 문제도 기본적으로 현실 공간에서의 준거법에 바탕을 두고 해결하여야 하는데, 준거법의 적용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해이그 국제회의와 국제기구 등에서 여러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고, 이에 적용문제를 다루는 각국의 판례도 아직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법상으로도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초기이어서 개정 법률의 의미와 그 타당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학제간 연구와 준거법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정한 시점까지는 성급하게 입법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부적인 준거법 결정원칙을 수립하거나, 단기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부터 향후 신중하게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어, 좀더 거시적인 논점으로서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법을 제·개정시 우리 법의 국제적인 적용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자거래에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입법을 하는 경우 국제적 적용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 분야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적 논점범위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급한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탄력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기술과 국제적 논의 동향의 움직임에 따라 전자거래에 적용되는 실질사법과 공법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재정립하는 위치에서 전자거래에서 준거법 적용문제를 점진

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고를 마감하면서 많은 과제를 남긴다. 먼저 시간의 다급함으로 계약분쟁에 관련된 준거법 적용에 대한 충분한 사례분석의 미흡과 준거법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교법적 연구 논점을 다루지 못하였다. 곧 이에 관한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02
- _____, 전자거래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13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 김용진, 지적재산권 침해와 인터넷국제재판관찰, 민사소송(V), 2002
- 노태학, 정보법학, 제5권, 2001
- 박종삼,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분쟁해결방안, 충남ECRC, 2003.3
- _____, 인터넷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97호, 2000.9
- _____, 전자상거래분쟁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논점, 중재연구 제13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2001
-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제2판, 도서출판지산, 2003
- _____,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제2권, 박영사, 2001
- _____, 국제재판관찰에 관한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1
- _____,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의 문제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2001,
- _____, 국제적인 증권담보거래의 준거법—PRIMA와 관련하여—”증권법 연구 제3권 제1호 2002
- _____, 개정 국제사법의 소개”,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8
- _____,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찰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브뤼셀 협약),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2001
- 산업자원부 외, 2002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2003.1

- 손경한, 전자상거래입법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통권 68호, 2002.8
- 안제우, 전자상거래에서의 재판관할에 관한 유형별 사례분석, 국제무역연구, 제8권 제2호, 국제무역학회, 2002.10
- _____, 국제전자상거래에서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9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9
- 이성호,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제문제.
- 양장수, 2002년판 독일 민법전 : 총칙 . 채권물권, 박영사, 2002
- 유영일, 국제재판관할의 실무 운영에 관한 소고(상), 법조 2002. 11
-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2
- 장준혁, 사이버거래에서의 국제분쟁과 준거법, 발표논문집, 국제사법학회, 2002.11
- 한국상사법학회, 디지털 경제와 상사법, 발표논문집, 2000.6
- 한충수, “국제재판관합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道垣內正人 註釋 民事訴訟法(1), 1991
- _____, “サイバースペースと國際私法-準據法規び國際裁判管轄問題”, ジュリスト, No.1117, 1997.8.1.~15
- _____, “國際裁判管轄の決定における特段の事情”, ジュリスト No.1133, 1998.5.1~15
- _____, “裁判管轄等に官する條約採擇をめぐる現況(上)(下)-2001年 6月の第1回 外交會議の結果”, ジュリスト No. 1211, 2001.11.1. No. 1212, 2001.11.15
- _____, “國際裁判管轄權”, 新裁判實務大系3,國際民事訴訟法(裁判法關係), 2002
- 岡村久道・近藤剛史, インターネットの法律實務, 1999
- 渡辺惺之・長田眞理, “義務履行地の 管轄權”, 新裁判實務大系3 國際民事訴

訟法, 2002

齊藤彰, “自然人にえ対する管轄権”, 新裁判實務大系3 國際民事訴訟法,
2002

野村美明, “事務所・營業所の管轄権”, 新裁判實務大系3 國際民事訴訟法,
2002

櫻田嘉章, “主觀的併合による管轄権”, 新裁判實務大系3 國際民事訴訟法,
2002

Avril Hain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the Judgments Project :
Thoughts for the Future”, Prel. Doc. No 17, February, 2002
Catherine

Busto, Charles del (ed.), UCP 500 & 400 Compared ,ICC, 1993

Fawcett, James J. and Torremans, Paul, Intellectual Property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1998

Fritz Blumer, “Patent Law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on both side
of the Atlantic”, WIPO Forum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2001.4

Graeme Dinwoodie, “Private International Aspects of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WIPO Forum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1. 2001

Kessedjian,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Preliminary Document No. 12, 2000

Jeffrey Kuester & Jennifer Graves, Personal Jurisdiction on the Internet
: Where is Cyberspace? 2002

Note, “Civil Procedure-D.C. Circuit Rejects Sliding Scale Approach to
Finding Personal Jurisdiction Based on Internet Contacts” .
Harvard Law Review v. 113, 2000

Nygh, Peter,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Clarendon Press,
1999

Ramberg, Jan, ICC Guide to Incoterms 2000, ICC, 1999

Reithmann, Christoph / Hiestand, Martin,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5.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1996

Rochelle Dreyfuss & Jane Ginsburg,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WIPO, Primer on Electronic Commerce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May, 2000

* 그 외 관련 법규 및 인터넷 사이트 참조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Governing Law to Application in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Lee-Soo Kang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raises some new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alternatives.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 is difficult without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pursue of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is very important menu. while the most common method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dispute is litigation. them relating to the litigation, the subject of governing law so jurisdiction and the subject of governing laws should be resolved above all.

Further 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governing law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governing law, where 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legal relational encompassing rules on governing law given the increase of It international disputes. for the mov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

Therefore, governing law to application concerned about electronic transaction should be prepared and the environment to keep electronic transaction secure and stable be guaranteed. And we should make plans to protect companies and consumers and should make efforts to expand electronic transaction infrastructure.

Key words: electronic transaction, governing law,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